

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4. 09. 13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0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(2024. 09. 30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생태하천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위탁 업무 및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탁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14조)
-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감면 기준 정비(안 별표 4)
 - (현행)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 - (개정)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

3. 관련법령
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
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개정(24. 3. 27. 시행)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 다자녀 기준을 정비하여 입장료 감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14조에서는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.
 - 안 별표4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감면 기준 사항을 규정.

- 종합검토 결과,
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 및 위탁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